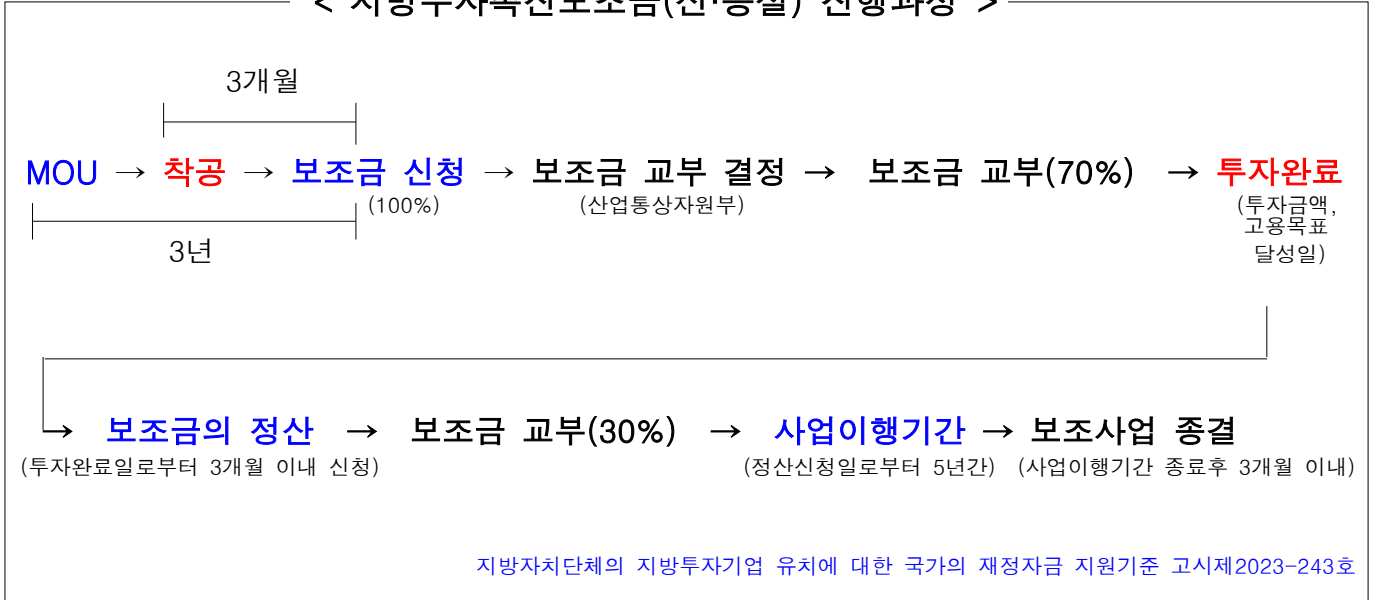
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(신·증설) 진행과정 >



- ※ 해당 안내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, 경상남도·김해시 조례의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고시, 조례가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신청 시 조례 및 고시 기준 적용)
- ※ **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**하여야 보조금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※ 보조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고, 산자부 고시 또는 경남도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.
- ※ 투자금액, 상시고용인원 요건 외 타당성 검사, 기업의 부채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서류제출이 필요하며, **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**됩니다.